#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3월 25일 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3월 17일, 금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3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3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3월 25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행정문화국장 송오섭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관계법령인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개정(2022.1.13.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 나. 주요내용

○ 기존 통장은 동장이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·해촉하였으나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동장이 위·해촉하는 것으로 정비(안 제5조)

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김수

## 나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전부 개정(2022. 1. 13. 시행)됨에 따라

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통장 위촉 주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

○ "동장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"라는 조문을"동장이 위촉하고,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"로 개정한 사항으로 적법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·타당하다고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**5. 토론요지**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